사후적 위헌법률심판 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 내규
(R?glement int?rieur sur la proc?dure suivie devant le Conseil constitutionnel pour les questions prioritaires de constitutionnalit?)

제1조

① 최고행정법원 또는 파기원의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제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에 등록된다. 제청결정은 제청 당사자 혹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② 공화국 대통령, 총리, 상원 및 하원의장을 비롯하여 필요한 경우 뉴칼레도니아 정부 수반, 양원합동회의 의장 및 지방의회 의장은 제청결정을 통지받는다.

③ 제청결정통지서에는 당사자들이나 상기기관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제청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날짜를 기재한다. 이 의견서나 증거는 제3조에 규정된 조건대로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에 접수된다. 이 날짜 이후에 의견서나 증거는 사건절차의 자료로 첨부될 수 없으며, 이 날짜는 연기될 수 없다.

④ 제3항의 의견서의 사본 및 필요한 경우 그들을 지지할 증거는 당사자와 상기 기관들에게 전달되고, 이들은 같은 조건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제3항의 의견서 및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의견서는 제3항에서 설명하는 첫 번째 의견서에 대한 답변 외의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그 사본 또한 사건당사자와 상기 기관들에게 송달된다.

제2조

심판절차에 관한 모든 소송서류를 비롯하여 모든 문서 및 증거의 접수는 헌법재판소 사무처 등록부에 기재된다.

제3조

① 심리도중에는 모든 소송서류 및 모든 증거를 비롯한 경고, 소환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전달된다. 수령통지서 역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전달된다.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고지될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들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메일주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그리고 대심절차의 성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기타 모든 송달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당사자 중 일방이 대리인을 변경할 때, 이러한 통지들은 변경된 대리인에게 전달된다.

제4조

① 심리를 기피하여야 하는 모든 재판관은 이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당사자 또는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특별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은 기피를 정당화하는데 적합한 문서가 첨부된 특별하게 이유가 부기된 문서를 통해 헌법재판관의 기피를 요구할 수 있다. 기피신청은 첫 의견서 수령을 위해 정해진 기한 전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등록된 경우에만 수리될 수 있다.

③ 기피신청서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재판관에게 통보된다. 해당재판관은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기피신청에 재판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피신청을 받은 재판관이 참석하지 않은 채 기피신청에 대해 심사한다.

④ 헌법재판관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의 제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5조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의사일정에 사건을 등록하고 변론기일을 정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제1조에서 명시한 당사자와 기관들에게 위의 사항들을 통지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서 주심재판관을 지명한다.

제6조

① 심리가 필요하여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열기로 결정하는 경우, 제1조에서 언급한 당사자들과 기관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부여한다.

② 제1조 제3항이 적용되는 정해진 기일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나타난 기일 전에 특수한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자가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사건의 소송참가 의견을 표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해당인에게 송부하고, 이들의 의견들을 당사자와 제1조에서 언급된 기관들에게 전달할 것을 결정한다. 헌법재판소는 당사자 및 기관에게 이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긴급한 경우, 헌법재판소장은 송달을 명한다.

③ 이 문제(당사자 및 기관의 제3자 소송참가 의견에 대한 의견개진 기한)가 언급되지 않았거나 송달되지 않은 경우, 최고행정법원이나 파기원의 하급심법원, 최고행정법원 또는 파기원에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청된 법률규정에 관한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④ 만약 이 소송참가 의견이 새로운 청구이유를 포함한다면, 그 송달은 동 내규 제7조에 따라 통보의 대상이 된다.

⑤ 헌법재판소가 제3자 소송참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

직권으로 제기된 청구이유는 당사자와 제1조에서 규정된 기관들이 주어진 기간 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기관들에게 통보된다.

제8조

① 헌법재판소장은 심판정의 질서를 보장한다. 헌법재판소장은 평의의 정리와 변론의 지휘를 담당한다.

② 변론은 헌법재판소 내에 있는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청각방송으로 전송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또는 청소년의 이익이나 사생활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론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① 변론이 개시되면, 변론장과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전항에서 언급한 중계방송에 필요한 기기 외에 음성 혹은 영상을 녹음, 설치 또는 전달할 수 있는 모든 기기의 이용은 금지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공개변론의 녹화영상을 참석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이를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공개변론의 녹화영상이 헌법재판소의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경우, 이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① 공개변론에서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사건과 소송절차의 단계를 환기하는 발언이 이루어진다.

② 당사자의 대리인과 소송참가가 허락된 자가 최고행정법원의 변호사 혹은 파기원의 변호사이거나, 필요한 경우 제1조에 관계된 기관에 의해 지명된 직원이라면 구두변론이 요청된다.

제11조

① 공개변론에 참석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만이 평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② 1958년 11월 7일 법률명령 제58조와 별도로, 이 평의는 공개되지 않는다.

제12조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사건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 적용되는 법률규정 및 통지된 의견에 대한 승인, 결정의 기초를 이룬 이유 및 주문을 포함하고, 해당 결정을 내린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들의 이름을 기재한다.

②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소장, 사무처장, 주심재판관이 서명날인하고, 1958년 11월 7일 법률명령 제23-11조에 따라 통지·공포된다.

제13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단순한 오기가 확인되면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와 제1항의 기관에게 이를 설명한 후 그것을 직권으로 교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당사자 및 제1항의 기관들은 헌법재판소에 결정문의 오기에 대한 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동 결정은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게재된다.